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41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6. 3. 27(금) 15:30 ~ 17:37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41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염상철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성기숙 위원님과 김미라 위원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셔서 11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 2026년 공연예술 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계획(안), 2026년 예비예술인지원사업 후속지원 추진계획(안),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6건과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안) 보고 등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 개최한 제414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이 상정되어서 모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3월 24일에 개최한 추경 관련 제415차 서면 의결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방금 말씀드린 추경 관련 안건은 보고 사항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 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189호 2026년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1189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문정신문화 전담 기관 지정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9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고요. 관련해서 해당 업무 인수인계 및 기존 수행 과업에 대한 정산 절차를 후속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3월 말까지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4월 1일자로 인문정신확산팀은 사무처 운영규정 문화기반본부 하부조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3년마다 기관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현재 부실해요. 현행법상 3년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부실한데요. 그럴 때마다 행정 낭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못 쓰는 상황이라서 지난번 유인촌 장관 시절에 더 이상 바꾸지 않고 저희가 계속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부서를 확정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장관이 바뀌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하듯이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무실 임차부터 해 왔던 일들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인력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인문정신진흥팀을 만들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조직을 다시 정리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만요. 오늘 전체회의 시간이 변동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줌으로 참여하게 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어서 저도 짧게 한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요청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인문정신문화진흥에 대한 것은 원래 문체부에서 계속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업무를 받아와서 약 3년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에서 2026년 2월에 이미 인문정신진흥팀이 직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건으로 현재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원래 있던 문체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소속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전담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후속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하다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온 것은 그만큼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서 3년 전에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왔고 전담팀까지 꾸려서 잘 지속해 왔었는데요. 이게

문체부 직접 수행도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지정돼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논리적 방어 내지는 대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비상임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요. 원래 있던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야말로 기관 정체성이 있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에 방점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저희 문예위가 하던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사업이 이관되어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문진흥법상에 보면 수행하는 기관은 3년마다 새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체부가 직접 수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부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맡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못 맡겠다. 임시적인 조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장관이 그 당시에 확답했던 겁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고요. 말씀을 해 놓으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성기숙 위원 : 여기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들으세요?

성기숙 위원 : 당연하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장관과 구두 약속을 했는데 결국 법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이 공모한 지 3년이 되었으니까, 문체부에서 새로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전제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서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법상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다고 할까? 순수했다고 할까? 장관의 구두 약속을 믿고 팀을 구성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정갑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화일반 위원님들이 인문정신문화사업 공모 때 심의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있었고 문예위에서 의욕적으로 전담부서까지 꾸렸는데요. 아쉽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90호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원심의 운영 규정 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저희가 전담심의제 시행으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 공개됨에 따라서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피제도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당 제도적 여건을 반영해서 지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지원심의 운영 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에는 해당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제11조는 원래 제척과 회피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었지만, 해당 내용에 기피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11조 5항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초에 없던 기피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에 따른 전담심의제가 운영되는 사업의 신청 주체는, 이 기피는 전담심의제 사업 즉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발표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신청 주체에 대해서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청한 사업의 심의위원이 각호에 따른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심의위원을 제외한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기본적인 내용만 현재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께서 지원심의 운영 규정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후속으로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3페이지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가안이라고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담심의제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 시행했던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 후 제척 수준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조회하는 기간을 7일 정도 가졌는데요. 해당 내용도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3조 5항을 추가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피 제도와 관련된 절차는 제3조의 2로 추가하려고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초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담당 부서가 감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심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해당 접수부서는 해당 심의위원, 기피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담당 사업 소관부서로 ‘감사부서’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해당 기피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기피당한 심의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심의위원은 그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심의위원께서 “이것은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래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회피 처리가 되고 일단락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접수 내용 사실과 의견서를 감사실에 있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서 감사실의 의견도 1차적으로 받고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그 안에서 의결을 받는 절차로 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관련 서면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양식을, 기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있었던 양식을 준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보았고요. 후속으로는 저희

가 이해충돌방지제도 규정에 심의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피 제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관련 근거를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참고 자료로 넣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심의 대상 단체가 또는 개인이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기존에 있었을까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저희가 지난해 명단 공개 후에 실제 기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원심의 운영 규정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단 처리했습니다. 약 2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죄송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항인지가 궁금해서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저희팀에서 접수한 사항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건 참 해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어떤 사안이 들어왔는지가 궁금하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적용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이제 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게 하려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상관없으니까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원총괄팀에서 신·구 대조표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 2월 전체회의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기억나는데요. 우선 지원심의 운영 규정 개정(안)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 명기해 놓은 게 맞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11쪽을 보면 신·구 대조표. 제194차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미 된 것인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라도 이것은 저희 기본 규정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지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미 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신거죠?

정병국 위원장 : 최종 의결을 받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 11쪽에 나와 있는 개정(안)의 11조 제척, 회피 및 기피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직자라고 함은 저희 비상임위원도 공직자로 간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담심의위원은 민간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심의위원 풀에서 사무처와 해당 분야의 비상임위원이 1~1.5배수를 추천해서 선정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전담심의위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직자로 해석이 되는지 여부와 해석이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직자인지? 왜냐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직자에 해당 되어야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에 부합해서 이 규정을 준용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검토했던 내용은 16페이지 참고 2에 있는 내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2조(정의)에 노란색으로 처리했는데요.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면 재직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게 맞지만, 현재 상위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렇고 그것을 가져온 저희 내규인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도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7의 (가)를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임명된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나)에 보시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심사 등 각종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로 보시면, 제17페이지 제4조의 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공무수행사인이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 안에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8조 제10항을 보시면,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제4조 및 제5조까지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4조와 제5조를 보시면,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기피 신청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서 명시하고 내용은 공무수행사인에 다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담심의위원을 11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명단을 의결하고 홈페이지에 2주간 공지를 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상임위원이 공직자라고 함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게 공직자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 규정에 의거한 이해충돌 방지에 적용되는 것들을 전담심의위원들한테 애초에 공직자라는

것을 안내했는지가 궁금합니다. 12쪽의 개정(안)을 보면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에 따른 전담심의제가 운영되는 사업의 신청 주체, 그러니까 개정안이 전담심의제로 운영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그밖에 전담심의 미적용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는 해당 사업이 없는지? 왜냐하면 기피, 제척 내지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이라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그 밑으로 여섯 번째 줄에 가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외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적 이해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는지가 모호하거든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실사 평가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담심의제 비적용 사업들을 심의위원은 결과 발표 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현재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 즉 심의위원을 사전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업만 기피 신청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당초 회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에 마지막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의 여지가 폭넓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적어서 국내에 있는 회피, 기피 제도를 다 찾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명시된 정도로 해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 조항으로 끝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2페이지 참고 3에 저희가 기피제도 관련해서 많이 참고했던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피제도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해당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명시해 놓았고 마지막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포괄적 조항으로 명시해 놓고 넓은 범주로 해서 기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지만, 이게 실제 지원 신청자의 불편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접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때는 접수받을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괄적 조항을 사실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장미진 위원 :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회피 신청을 대부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회피 신청이 기피 신청보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됨과 동시에 기피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닌가? 작년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단 2건이라면 그것 때문에 규정을 이렇게 바꿔서 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난해에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 관련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가 모호했기 때문에 해당팀이나 감사실

에서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에 명시해 놓는 것뿐이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앞서 제척 수준, 아예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수준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의견조회를 공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지만, 기피 제도는 규정을 명시해 놓을 뿐이지 공개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세요.”라고 해서 접수받는 기간을 홍보하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장미진 위원 : 실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저희가 공모를 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그것을 분석해서 제척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처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기피의 상황이 있음에도 절차대로 심의위원 구성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심의위원님과 지원신청 단체 혹은 개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미진 위원 :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애매해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지금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과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2건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2건이 아마도 2월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무용 분야 특정협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심의 운영 규정을 오늘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하기 이전에 특정협회가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으로 이루어진, 2025년 12월에 심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개정되기도 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정도 없이 그런 일들을 심의 과정에서 이미 행하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일부 인정을 하셨는데요. 전담심의제로 운영되는 사업만 한다면 전담심의제 미적용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 관련된 것,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 지역도약사업 등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원심의에서는 공정성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피, 제척, 이해충돌 등을 벗어나서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지영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데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을 개정(안)에 문구로 명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17쪽부터 18쪽에 나와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관한 조치 결과 통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26년도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한테 기피, 회피, 이해충돌 등 오늘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연 안내하였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영 팀장님께서 관련 법령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20쪽에 나와 있

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에 예시된 내용과 저희 문화예술 현장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을 모토로 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의 문예위의 지원심의에 관련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매우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현장 예술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무처와 장르의 비상임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1~1.5배수 추천해서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저는 권한보다 책임감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피, 회피, 이해충돌 등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문예위 홈페이지에 전담 심의에 들어가기 전 11월에 이미 명단을 공개해서 검증 기간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적절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게 이런 장치를 해 놓고 제외를 시킨다면 일정 부분 모욕감을 주시는 부분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또 하나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4쪽을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제2조(정의) 7항에 공무수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무수행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전담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문예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이해충돌을 생각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의 대표들은,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은 전면 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은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정병국 위원장 : 이제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해충돌 담당관이 자료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이해충돌 담당관이 혹시 누구신가요? 문예위 감사관실에 있는 분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직제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답변을 들으시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충돌 담당관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해서 각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담당 소관 팀인 감사실에서 해당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척, 회피, 기피에 대한 내용은, 현재 기피 제도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시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회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심의에 참여해 보셨겠지만, 심의위원이 모이는 모든 절차 그리고 섭외 과정. 저희가 심의위원들께 요구 드리는 모든 자료의 회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관련 근거 규정으로서 저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심의 운영 규정(안)에 있는 제척이나 회피는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했

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빠질 수 없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만들었던 위원님들 대상의 가이드나 지침 그리고 심의 현장에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해당 영상 내용에도 다 포함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건 접수된 근거에 대한 것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 이해충돌 방지규정 내규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기관 관련하여 어떤 공모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관련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법규나 규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대상을 적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괄적 규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하나라도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을 처리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건이 나왔는데 2건 때문에,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행규칙을 우리가 마련해 놓지 않고 그런 처리를 한 과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일반 법정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절차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항들도 전제해서 마련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사항 같은 경우에도 심의 절차를 더 구체화 해 달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작년 2건의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 없는 만큼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만약 그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또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부 규칙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필요성에 의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특정협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가 되고 후속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먼저 제기가 돼서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고 소추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1쪽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 11조에 보면 “심의위원은....” 이렇게 나오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직자라고 함은 저희 비상임위원도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직자라고 했을 때는 비상임위원보다도 전담심의위원회 내부자 중에서는 비상임위원과, 물론 2026년에는 비상임위원의 참여가 의결로 폐지되었습니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직자

중 공직자라고 볼 수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전담심의관은 2025년과 2026년에 일괄되게 전담심의로 이루어지는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용 분야 같은 경우 전담심의위원으로 문예위 직원이 지금 2년 연속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배우자가 특정협회에서 주최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성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성기숙 위원 :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평가·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정병국 위원장 : 마이크를 꺼주세요.

(성기숙 위원 마이크 꺼짐)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데요.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있거나 제척 신청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 제척이나 기피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자꾸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 마이크를 켜 주세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거론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주세요.

(성기숙 위원 마이크 켜짐)

성기숙 위원 : 들리시나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특정인을 거론하지 마세요. 특정인을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 제척이나 기피를 했겠죠.

성기숙 위원 : 그 부분은 2025년 현장토론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어서 문예위 관련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기를 하시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혼자서 하실 수는 없고 서승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먼저 하신 다음에 하세요.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기피 신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피 신청은 사실 우리 기관이 뒤에 넣은 것이지 다른 기관 같은 경우 기피 신청이 거의 있어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심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악용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기피 신청 권리 상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훈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경 위원 : 저는 더블 체크 차원에서라도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오히려 추후에 다른 일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하고 회피신청을 하겠지만 신청단체 입장에서도 기피를 할 수 있는 것은 더블체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기권이나 또는 연극 분야 같은 경우 음부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았을 때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신청단체들이나 누군가가 또 다른 족쇄가 되거나 또 악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것 또한 체크를 해서 그런 장치까지 다 고려해서 제도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것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서승미 위원님과 이훈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 악용될 사례에 대해서 아까 장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사례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서승미 위원 : 8조에 1항 같은 경우 그냥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라고 그쳤거든요.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을 뒤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보강된다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서승미 위원 : 17페이지 제8조.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해당 내용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이라서요.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를

답으려고 하는 것은, 13페이지에 있는 운영 지침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여기에서도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항은 조금 다른 항인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었던 심의위원 명단을 게시 후에 그로부터 의견조회 기간을 거쳤는데요. 그때는 제척 수준의 이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접수 받은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있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기피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항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기피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님한테도 소명을 받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실의 이해충돌방지관이 또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다 확정된 게 아니라 해당 분야 지원심의위원회 6인이 모여서 이 부분이 “인용할 만하다.”, “아니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보완하시고요. 지금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남용되면 사무처도 골치가 아프고 위원회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숙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8기는 마지막인데요. 보완할 사항도 있고 논의를 할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새로 오는 9기에서 그분들이 담당할 테니까 그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주로 적용되는 게 11월 아닌가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당장 급해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래도 전담심의위원 명단 공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회의록에 논의한 게 남아 있으니까요. 결정은 다음에, 한 달 뒤인데요. 그분들이 와서 더 들어보고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하라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우리 8기 위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니까요.

정갑영 위원 :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게 있잖아요. 걱정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면 이번에 처리하는 것은 보류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

심의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아실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면 당장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단부터 구성하고 제도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회피와 기피까지라고 할 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사무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발언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훈경 위원 : 위원장님,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주고받았던 내용들,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답아서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올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성기숙 위원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이라고 한 것은 사실 2025년 12월에 있었던 2026년 문예진흥기금 관련 심의 때 해당된 것이고요. 1건은 2025년 전담심의제로 지원이 돼서 평가·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26년 1월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담심의관의 경우에는 평가·모니터링을 한 점수가 합산되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규정 위반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추후에 논의하고 문예위 사무처도 조금 더 예시로 참고할 것을 더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자율기구로서 현장 예술가들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심의 운영 제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고요.

정병국 위원장 : 정리를 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또 이것이 상위법이 있으면 그 하위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적용하고 판단해야 하는 건데 지금 무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개정되기도 전에 미리 그렇게 적용돼서 처리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은.

성기숙 위원 :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이 회의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무처에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22쪽을 보면 기피제도 관련 내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2쪽을 보면 정책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외부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3년 과정으로 예술 장르별로 생태계 연구를 외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전담 심의제에 대한 연구 수행은 아마도 방송대학교 교수팀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한 현장의 전문 연구자들은 이 심의에서 다 빠져야 되는 것인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마지막에 드린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규에 어떤 식으로 기피제도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회피 규정이 있다면 기피 규정이 세트로서 제정된 경우가 많지만, 아시다시피 기피라는 것은 본인을 평가할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피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각 규정에 있는 내용 관련 업무 중에서 평가자를 누군지 먼저 고시하거나 그런 경우로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만 일단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전번호 제1191호 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전은 박설아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설아 공연예술팀장 : 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모 결과는 1,124건에 25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쪽의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은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입니다. 전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도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반영해서 공모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이는 공연 기간을 4월 말, 8월 말, 12월 말 등 3회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액을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은 한국소극장협회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은 2026년도 4월부터 2027년도 3월까지입니다. 12개월 예정입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2026년도 5월 1일, 9월 1일, 12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때도 참 재미있게 생각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작년에 지원받은 예술가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박설아 공연예술팀장 : 답변은 지금 대관료지원사업 담당자인 최창섭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섭 공연예술팀 과장 : 대관료지원사업 담당자 최창섭 과장입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사항은 작년도에 동일하게 공모 시에 게시가 되었고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외국인은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공통 기준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 건수 중에 대표자로 신청한 건이 1건 있었고요. 선정에서는 최종 선정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 사유는 그분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요. 그 외에 참여자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선정된 건이 2건 있었습니다.

장미진 위원 : 나올 때 국적도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연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했고 작년에 1건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궁금한 것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31쪽에 보면 필수 제출 서류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제출 가능한지? 그분이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데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28쪽에 있는 내용에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지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공공지원의 보충성 강화”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저희가 문예위 지원 사업 중에 핵심이 창작산실과 창작주체인데요. 이 사업을 수혜 받은 예술가가 공연장이 없어서 사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애초에 지원신청 당시하고 변경돼서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지원으로 받은 단체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과 균등 지원을 한다는 사각지대 해소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공연장이 제한적이라서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9쪽에 보면 작년에 주관처가 한국소극장협회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2025년에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사업 수행을 한 결과치, 평가·모니터링의 성과나 강점과 단점, 개선점은 없었는지? 혹시 사무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설명하세요.

최창섭 공연예술팀 과장 : 예.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외국인이 신청하려고 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활동증명서가 있다는 것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활동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명서만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최창섭 공연예술팀 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필수 제출 서류라는 것이 충족 안 되더라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초기에는 논쟁이 있었어요. 외국인한테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 리더 국가로서 도약했고요. 이런 가운데 해외의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절차에 의해서 응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자. 그래야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좋고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다양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이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외국인이 활동했다는 근거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활동증명서를 갖고 오면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하는 지점도 있습니다만,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나머지를 다 설명 듣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계속 하세요.

최창섭 공연예술팀 과장 : 예. 두 번째로 문의해 주신 부분이 사업 변경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후 지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연이 완료된 단체에 한 해 지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선정되고 본인들이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해서 선정 취소의 경우는 있지만 사업 변경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창작산실 등에 지원했을 때,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어느 극장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해야 되거나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창작산

실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관 지원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 아니었나요?

성기숙 위원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공연예술팀장이 새로 오셔서 완벽하게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당장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회의자료를 보시고 그런 의문점이 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준비했을 텐데요. 지금 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들은 사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박설아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기숙 위원 : 예. 공연예술팀장님이 새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문예위 지원 사업인 창작산실, 창작주체의 공연장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역유통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지역 공연장 하고 매칭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원신청서, 대관예약증빙서류,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납부증명서, 공연장등록증 사본 등이 필수 제출 서류인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예술가들은 이러한 공연장 대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데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필수 제출자료가 없어도 된다면 자칫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류는 다 내야 되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내국인이 내야 될 서류. 예술인복지재단의 증명서로 같음한다는 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것이든 우리가 지원한 것이든 그것은 공간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못 하고는 능력 부족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관료 지원 사업은 자기들이 창작했거나 자기들이 공연물을 제작했지만 공연장 자체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된다거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 : 이런 사례가 국가인권위에도 호소하는 사례가 있고 국가인권위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하지 않으려면 예술활동증명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예술인증명

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활동을 증명하면 우리나라의 예술인과 똑같이 예술증명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문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증명을 인정해 주냐는 것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게 된다고 하면 여기의 필수자료는 외국인들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로 나중에 토론을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님 또 다른 게 있나요?

이훈경 위원 : 배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외국민 때문에 일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일어났고 결론적으로 환수 조치 철회까지 가서 예술인증명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그것은 결국 국내에서 90일 이상 활동을 했을 때는 재외국민이라도 예술가로서 증명을 해 준다고 이미 판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관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그들이 모두 낼 수가 있습니다. 못 내는 서류가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게 모두 충족되어야 대상이 되는 거죠.

이훈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복지원 건도 이것은 처음부터 자비로 창작했을 경우 창작지원금의 일부를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지 그냥 대관료 지원을 무조건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비로 충족하면서 창작해야 하는 예술가들한테 일부 지원금을 보존해 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지원 사업과는 연계할 수 없는 다른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마치 그 사유를 보면 국내에 있는 내국인과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이라든지 혹은 재외 동포라든지 혹은 국내분들과 결혼한 사람들로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외국인이 아니라 거의 내국인에 준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국적만 한국이 아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국에서 보통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병국 위원장 : 장미진 위원님 먼저요.

장미진 위원 :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르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요. 연극/뮤지컬 선정이 158건이고 음악이 946건입니다. 그래서 신청 건이 다른가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정률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57%가 되는데

비해서 음악은 78%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설명을 해 보세요.

최창섭 공연예술팀 과장 : 예,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때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선정률이 낮은 겁니다. 반면에 음악 쪽은 기획사를 통해 대행을 해서 상대적으로 선정률이 높습니다.

성기숙 위원 : 외국인 문제는 작년에도 1팀밖에 안 돼서,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얘기가 됐으니까 하실 말씀만 하시라고요.

성기숙 위원 : 장황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어서요. 작년에 주관처인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사업 수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결과가 있는지? 성과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국인 이야기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창호 팀장이 해 왔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극장협회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이 사업은 자의적으로 예술적인 부분을 심사한 게 아니라 요건의 유무만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업의 요건을 심사하는 게 정확한 부분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재단이나 실무자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공공재단의 중복지원이나 다른 공공지원을 받았는지 유무를 살펴보고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정산할 때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1,500개 개인 예술가나 단체를 포함해서 전부 다 e-나라도움으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의성이 있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단순한 질문을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30쪽을 보면 지원심의에 있어서 1차, 2차. 2차는 필요시라고 해 놓고 지역문화재단 또는 장르별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차 ‘필요시’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예술인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을 저희들이 보면 공공지원을 받지 않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프로페셔널 예술가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예술활동증명 자체로만 봤을 때 그 부분이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그쪽 장르 쪽과 관련된 협회 쪽의 의견을 좀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했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전번호 제1192호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박설아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설아 공연예술팀장 : 2026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잔여예산 활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작년 2026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단체 중에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에 1억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액 5억 중에 규모 축소나 구조 변경으로 유지가 어려워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저희 쪽에 사업 포기 의견을 주셔서 사업 포기를 접수하고 차순위자인 한국음악협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 2,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을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15개 축제인 아르코썸페스타에 개막 공연을 지원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 4개는 47쪽 박스 상단에 4개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잔여 예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액수도 많지가 않고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46쪽의 붙임자료에 2026년 아르코썸페스타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데요. 부제가 “2026년 세상의 모든 공연 축제”라고 되어 있고 7월에서 8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완전 여름이라서 계절적.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본 안건과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썸페스타는 의결을 이미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거론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만 집중해서 의결의 찬·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5년 같은 경우 아르코썸페스타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이 공유되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직 진행이 안 되었어요. 오늘 안건이 아닙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사안별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면 회의가 언제 끝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찌라는 겁니까? 시간을 내서 왔는데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안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궁금하신 것은 추후에 물어보세요. 회의 때는 안전에 집중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셔야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라고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는데요. 비상임위원도 위원장님과 동등하게 수평적 관계인데요. 제 발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회의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자괴감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에 쫓겨서 계시는데요. 위원님이 의제와 벗어난 것을 자꾸만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비상임위원도.

정병국 위원장 : 최소한 회의를 하는데 예의가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주재자는 정병국입니다.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이 안건과 마땅치가 않으면 제가 제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비상임위원으로서 저희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권한을 침해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성기숙 위원 : 마지막 회의까지 이러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굴욕감을 느낍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성기숙 위원 :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93호 2026년 예비예술인지원사업 후속지원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51페이지입니다.

저희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후속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트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나를 예술대학의 연계 지원 사업이라면, 또 하나는 예술단체의 예술인 최초 발표지원입니다.

3번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예비 예술인 후속지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인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2025년도에 지원했던 예술대학이 총 12곳입니

다. 12곳 대학에 재학생 1명을 예술대학에서 추천받아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던 단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최초발표지원사업 후속지원은 2025년도에 저희가 20개 단체를 지원했었는데 이곳에서 모니터링·평가를 통해서 평균 평점 이상을 받은 11개 단체에 대해서 후속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예비 예술인들이 주체가 돼서 기획서를 제출하고요. 저희가 적격 평가를 통해서 작품을 디벨롭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앞과 중복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2개 대학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7월부터 이 친구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예비 예술인 최초발표후속지원은 마찬가지로 최대 3,000만 원까지 11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4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해서 7월에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지원 현황 및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은 예술단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은 예술단체에서 정해서 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저희가 몇 개 현황 체크를 해 봤을 때 컨소시엄을 했던 단체는 이 학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뛰어난 학생을 인턴십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 학생들은 어떻게 뽑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학교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진각 위원 : 학교에 다 위임을 하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김진각 위원 :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은 어떻게 하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아직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현장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표 등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진각 위원 : 인턴십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추천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그 예술단체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뭔가 자기의 커리어와 연결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단체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인지? 아니면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지원신청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지원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일단 컨소시엄을 했던 단체에 가서 현장과 연계해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까지 생각했구요. 이 단체도 이 학생이 왔을 때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되었는데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서 1차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또 인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낼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것을 받고 그것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예비 예술인들이 인턴으로 가서 제대로 수련 기간이 될 수 있게, 그냥 잡일이나 시키다가 끝나지 않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단체들도 모르는 대학생이 오면 그냥 잡일밖에 시킬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 경험을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군데 확인했습니다. 다만,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지원신청서를 받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여기 컨소시엄 하는 단체와 예술단체에서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각 예술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예술단체를 추천받는지, 여부하고요. 붙임자료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대학이 있는 4년제 대학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2025년도에 공모 심사를 통해서 2025년도에 이미 사업을 했던 대학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사업이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나 예술 단체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인턴십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던 예술단체와 예술대학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래서 예술대학이 저희한테 2025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대학이 12곳이고요. 이 대학에서 1명씩 후속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느 단체와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다 적기 때문에, 그 단체 위주로 보낼 생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언뜻 드는 생각이 연수단원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 그것과 조금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유사해 보이기는 합시다만 다른 점이 있을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은 재학생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졸업 전에 현장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예술 현장에 잔류할지 안 할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194호 2026년 소년소녀 합창단 해외공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전은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61쪽 중단에 있는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평화통일희망유럽대장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 반영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기금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중에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공연 행사니까 문화예술 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었고요.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의견을 내서 특정 단체와 특정 사업에 대한 지정 교부 방식보다는 공모사업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우리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대한민국공연예술제사업 내 3억 원을 공모형으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봐주시면, 단체당 1억 원 이내에서 3개 단체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이 편제되어 있는 창작주체 그리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담당해 주셨던 전담 위원님들의 심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공고문(안)이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다른 공모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모두 반영했고요. 이 사업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63쪽에 소년 소녀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의를 넣었습니다.

64쪽의 지원심의 기준 중에서 다른 사업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역량도 반영했고요. 이 사업이 목표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친선이나 인지도 그리고 합창단원의 역량 향상도 심의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선정되는 단체들은 지원 조건으로 미성년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 1인 의무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그리고 안전교육 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건들을 분명하게 지원 조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한시라고 한 것이 2026년?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쪽지예산.

왕치선 위원 : 나머지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고 진짜 한시인지 아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올해 한시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런데 공모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거든요. 30일부터 13일이면 15일 정도인데 이 정도로 공모가 난다면 준비기간도 짧을 텐데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우려해 주시는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 사업에서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견을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월에 공모 계획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공모 기간은 좀 짧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규정상 15일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모 기간 원칙을 지키되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사실은 이게 정식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초청장이나 대관 승인 서류가 와야 되잖아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교류할 때 메일을 주고받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두 번밖에 주고받을 수 없는 기간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소위 말하는 국회 쪽지예산에 의해서 되었는데요. 쪽지예산은 기재부가 주기는 싫는데 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절차상 공모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처음부터 쪽지예산으로 주려고 했던 데는 한 곳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말씀하세요.

성기숙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기재부든 문체부든 국고 일반회계로 요청했다가 부담이 되니까 위원회로 넘어온 쪽지예산 지정 사업이나 마찬가지로인데요. 조금 기존과 다른 것은 공모제로 추진한다는 것에서 조금 포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음악 장르만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원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3억 안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이미 심사해서 지원단체와 지원 결정액이 끝난 것인데요. 3억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재원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재원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제 사업 안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공연예술지원이라고 하는 편목. 그러니까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3억 원은.

정병국 위원장 :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이해했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공연예술 지원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성기숙 위원 : 이해했습니다. 포장만 대한민국공연예술제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희영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경영지원팀장 : 67페이지입니다.

2026년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완전 위탁형 제도에 따라서 2026년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계획을 1월 완전 위탁사인 미래에셋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 안에 있는 투자폴위원회에서 심의를 2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심의 결과가 저희 기관으로 3월 10일에 통보되었고 해당 내용인 자산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여유자금 규모는 작년 말에 1,380억 원에서 올해는 835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 규모는 2025년도 말 금액에서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재 복권 기금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96%로 기금의 원활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설정으로 목표 적립 배율 달성을 위한 요구수익률과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 높은 값인 2.93% 도출하였습니다.

장단기 자금의 목표비중은 작년에는 안정적으로 사업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단기자금 중심으로 운영하였다면 올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자금 비중을 27.8%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적정 유동성 비중은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을 기초로 분석한 계산 결과 131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전년 대비 축소하여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허용 위험 한도는 물가상승률 미달 가능성 15% 이하로 허용 위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표에 대한 설명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 이후 4월 3일까지 재정경제부 투자폴운영위원회로 결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연중 전담 주관운영사인 미래에셋 자산 운영사가 자산운영계획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운영을 했고요. 직접 운영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니까 적은 수익이지만 2.76%의 수익을 내게 되었고요. 저는 우리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 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저는 안정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위탁운영을 결정했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지난해에 위탁운영을 한 결과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2026년 지역 중심 예술가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지역 중심 예술가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돼서 25개 재단과 20억 원의 기업후원금이 유치되는 좋은 성과를 거둬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사업이 중간에 컷 기획이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이 별도의 후원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지원 사업을 좀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2026년도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후원사업의 예산을 설치 하셔라.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 드렸고요. 다행히 많은 지역재단이 매칭펀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매칭펀드는 아시겠지만, 지역 예술 단체에게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후원하면 지역문화재단이 1,000만 원을 추가하여 매칭하는 지원 사업을 의미하고요. 이런 매칭펀드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16개 광역·시·도와 선도문화재단 그리고 일반 기초문화재단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 및 선도 같은 경우에는 매칭 사업비의 100%를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는 30%. 일반 기초문화재단은 150%, 50%. 인구 감소 지역은 200%와 70%로 해서 소외된 지역들을 조금 더 복돋으려고 했고요. 6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적 우월성보다는 행정적인 부분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적격성 평가로 추진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사업이해도가 높은 작년도 심사위원들이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심사 기준은 예산확보 및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체계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총 18개 지역문화재단이 신청해서 강북문화재단을 제외한 17개 재단이 선정되었고요. 결정 현황을 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인 부안군 문화재단에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6,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는 2,100만 원으로 총 8,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회피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기타 사항을 보시면 잔여 예산 활용입니다.

잔여 예산이 21억 6,000만 원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지역문화재단-예술가(단체)-기업 간 등 3자 간 결연에 대한 발굴 시상제도로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해서 확산까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는 관련된 심사 결정 내역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성과 적격성만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인식개선 음악동화 피노키오’가 ‘부’ 판결을 받았잖아요. 행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를 받았나요?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매칭펀드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전제로 해서 사업 설계를 해 주십사 지역재단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이 자체를 지정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게 이번에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잔여 예산 지

원 유형2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67쪽을 보면 지역문화재단 구분에 따른 매칭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매칭 비율 기준에서 편차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 기초문화재단이라서 이렇게 매칭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편차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도 아주 잘 된 것 같고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과 기업이 매칭을 통해서 동반성장해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아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비, 운영비 선정에서 산식이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역문화재단이면 공공기관인데 이런 선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당부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산 교부 이전 단계에서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 등을 연계해서 사전 관리 체계가 면밀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차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매칭펀드 예산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문화재단과 충남, 충북 등 세 곳밖에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17개 지역문화재단이 이런 후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과 그 외 16개 광역과 일반자치단체를 구분한 것은 아무래도 사업비 규모라든가 재단의 경영 여건이 완전히 다르고요. 당연히 기업의 후원 의지나 기업의 개수 등이 다 달라서 저희가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산식 같은 경우 지역문화재단은 아무래도 이 사업이 처음 실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뒤에 사전검토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역 문화 재단에 교부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교부 직전에 다시 한번 교부신청서를 검토해서 확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부 단계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사업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지역문화재단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과연 될까?”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내니까 너도, 나도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2026년 경영전략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2차 회의는 안건이,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정책 연구과제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9개 과제가 올라왔고 그중에서 4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소위원회 검토 의견까지 합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4개 과제가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효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배정된 예산 전체보다는 예산 중에 일부를 앞으로 다른 과제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예비 예산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2에 올라온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생태계 조사 과제도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연구를 참조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정책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 2026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3차 회의결과 보고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83쪽을 보시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얘기한 게 아르코웹진 3월호 발간 계획과 통합 VI라고 해서 Visual Identity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예술나무 홈페이지 개편(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아르코웹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특히 주체를 잡을 때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하자.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부터 적용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아르코 이니셜인데요. 밑에 통합 브랜딩 Visual Identity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 사업별로 우리 극장이나 미술관 등 홍보를 분리해서 하는 게 전체 회의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우리 아르코가 전체적인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다 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로고를 만드는 것으로 브랜딩 전환 전략 가운데 워드마크와 심볼의 하이브리드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잡지에 할 경우와 현수막에 할 경우 등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츰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통합 브랜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르코라는 것을 브랜딩 한다고 하면 아르코도 현재 이니셜로 잡아보면 어떠냐고 해서 직원들끼리 학습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도 사실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만 할 일은 아니기는 한데요. 통합브랜딩이 되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이나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후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이나 데이터 확보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일을 할 작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저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정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송시경 사무처장 : 참고로 9위 위원 선임 관련은 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끝났고 월요일에 8인을 뽑게 되는데 2배수에 해당되는 후보들을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위원 추천까지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체부에서 언제, 위촉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발표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위촉에 들어가는 겁니다. 4월 중에 위촉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4월 24일 금요일로 하고 문체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4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 진행 사항을 정창호 팀장이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 추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름으로 참여하시는 두 분께도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논의가 구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을 정하기 앞서 저희 쪽에서 기본적으로 취했던 태도는 문예 기금 적립금 및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적립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최

대치를 설정한 금액이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경 금액은 958억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저희 적립금이 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육 기금 전입금으로 일단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보면 창작지원인력육성, 문화예술향유지원, 생활인안정자금, 산업융자까지 있는데 표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일단 저희 융자사업 2개가 합쳤을 때 마지막 2개입니다. 828억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공연예술관람료지원까지 더 해지면 897억으로 추가경정 편성 예산의 92% 정도가 마지막 3개에 포함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그렇게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사업이 정해진 부분이고요. 저희 창작지원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창작산실 그다음에 시각예술공간, 공연예술공간으로 각각 10억씩 증액이 되었고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연자 중심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39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간략히 이 정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명목상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958억으로 1,000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인데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119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 주는 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체육 기금 758억 원이 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입이 되었다가, 예산 소진이 안 되면 체육 진흥 기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으로 남아요. 이것은 그냥 보고 사항이고 이미 서면 의결로 의결을 다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회이고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은 협조 하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현장에서는 위원회로 인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고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 아쉬울 것 같아서 사무처와 협의하기를 “퇴임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저만 생각하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한 번 쯤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례적인 그런 퇴임식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니까 “작은 음악회라도 하자.”라고 해서 음악회 겸 퇴임식을 하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한 감사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식도 하려고 하는데 날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8기 위원회 퇴임식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5시에 하고 저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2025년 국정감사 관련해서 짧게 서면으로 제출하느냐가 논의되다가 제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전체회의 때 결과보고 자료에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명시되었는데요. 그때 언급은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속기록에는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 분야 비상임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공

모를 통해서 비상임위원을 선정했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무용 분야 위원도 선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종 발표를 문체부에서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 검증을 통해서 제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 구성.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쁘다고 하시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심의위원 구성, 전담심의 결과 등이 다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 : 노동조합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노조에서 말씀하세요.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 : 예.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성기숙 위원님께서 특정 사무처 직원의 근거 없는 이유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셨지만, 당사자는 이런 공식적인 전체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업무상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노동조합 선생님 존함을 여쭙봐도 될까요?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 : 노동조합 비대위원 조강주입니다.

성기숙 위원 : 조강주 선생님이신가요?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성기숙 위원 : 조강주 선생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 : 정말 끝까지 성기숙 위원님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못 하게 하시네요.

정병국 위원장 : 남아서 계속하실 거잖아요. 저희들은 떠나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십니까?

성기숙 위원 : 저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정병국 위원장 : 비상임위원인건 알아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위원인 저한테 발언을 중단하는 부분은.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사안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기에는 성기숙 위원님 혼자 회의를 하시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성기숙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나머지 10인의 위원님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성기숙 위원님의 개별적인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회의와 상관없는 얘기를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배려하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위원님이 계속 위원님 말씀만 하시는데요. 제가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문화예술위원회 민간자율기구로서.

정병국 위원장 : 다 안다니까요, 그 절차를요.

성기숙 위원 : 응모했을 때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혼자하세요. ㄴ세요. 이상으로 제41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회의 종료)